

#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38
----------	----

제출년월일 : 1998. 11. 1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이유

- 우수한 평창군관내 출신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장학기금설치 목적(안 제1조)
- 나. 기금의 조성방법(안 제2조)
- 다. 기금의 관리는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안 제4조)
- 라.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평창장학회에 위탁하여 처리한다.(안 제6조)
- 마.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평창장학회정관 및 지급 규정에 따른다.(안 제7조)

##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29조
- 지방자치법 제133조

##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출신의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육성 지원 하므로써 면학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평창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한 사무비 등 최소한의 경비와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선발된 평창장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지방 제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 운용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서무담당주사로 한다.

③장학금은 제2조의 방법으로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입금중 10%는 원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충당한다.

**제5조(회계)**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출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관리의 위탁)**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는 재단법인 평창 장학회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제7조(기타)** 기타 장학금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정관 및 지급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29조(예산 총계주의 원칙)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 이라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